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공사 설계 자격 규정〉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42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공사 설계 자격 규정(안 제7조 제2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7.

다. 회 부 일 : 2025.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기 간 연동성 및 호환성 보장 등의 기술적 과제와 함께, 홈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공 품질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설계 업무 수행자의 역량, 경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공사 설계 자격 규정(안 제7조 제2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 기술사가 전부 책임 또는 일부 책임을 맡은 정보통신 기술자로서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안 제7조 제2항).
- 안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6조 제2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계 등) ① (생략) <u><신설></u>	제7조(설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u>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 기술사가 전부 책임 또는 일부 책임을 맡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3. ~ 6. (생략)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 9. (생략) ②·③ (생략)	다. ③ 제2항-----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제76조(벌칙)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제78조(과태료) ① ----- ----- ----- -. 1. 제7조제3항----- ----- -----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가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함¹⁾.
- 용역업자는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²⁾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②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 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를 말함³⁾.
-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함⁴⁾.

1)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정보관리·산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 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처럼, 현행 규정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도서 서명·기명날인을 하고 있음.
- 안 제7조제2항은 모든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이하 “중요 공사”)는 해당 분야 기술사가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도서 작성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공사의 수준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를 달리하려는 것임.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설비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용 홈네트워크의 보급 확대 및 주택 내 통신설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전문성이 있는 자가 맡도록 하고 공사를 세분화하여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의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 그리고, 전기 설비와 소방 설비의 경우 이미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설계업을 규정하여 해당 분야 기술인력을 등록 요건에 포함하고 있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공사의 설계도서는 각 분야의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건축법」⁵⁾ 및 「건축법 시행령」⁶⁾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건축설비 설치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협력 대상 분야에 전기, 소방, 기계 가스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전기·소방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설계도서 작성 주체의 전문성을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전기·소방설비 설계 관련 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별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 4. (생략)

6)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배수(排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⑤ (생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주요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주체를 ‘해당 분야 기술사’로 표현하였는데 해당 분야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정보통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도 포함될 우려가 있음.
- 이미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관계 법령은 용역업자를 정의하면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주요 공사가 아닌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분야도 이와 일치하므로,

안 제7조 제2항의 ‘해당 분야 기술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 기술사’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주요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시 공사 일부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로 발주된 정보통신공사에 여러 기술사가 설비를 나누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그러나, 단일 공사에서 설계도서를 여러 기술사가 나누어 작성하고 각 부분에 대한 책임만을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공사 설계

전체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및 책임 주체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경우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도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여러 공종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별로 설계 책임 분할이 가능할 뿐 단일 공종의 설계에도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음.

○ 셋째,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에 정보통신공사를 발주 받던 용역업자가 중요 공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기술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상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를 전문 기술자인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구체화하고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술사가 설계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나,

정보통신공사에는 계측제어설비, 네트워크 전산망 설비 등 다양한 정

7)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통신설비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통신공사 관련 기술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 기술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 기술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전동발전기설비 등 전력설비를 정보통신공사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형공사 등을 전기분야 비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만 설계하도록 하면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현실적으로 업체들은 수주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력설계업과 정보통신설계업을 대부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계수주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사 추가 고용이 사실상 강제되어 영세업체의 부담이 강화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대한 일부책임을 인정하여 단일 공정의 공사에서 기술별로 책임자를 나눈다면 해당 분야를 나누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 분야가 섞여 있을 경우 여러 기술사를 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공사별로 설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는 참여기술자로 공사에 참여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기술사의 책임 소재 범위를 전부 책임 또는 일부 책임을 맡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범위로 명시하면 향후 사고

발생 시 설계 책임소재 불명확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기술사를 채용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계용역 업무와 입찰 등 업무수행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통신분야 기술사에게 설계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건축사 및 전기설계자와의 협업을 저해하고 단절된 설계로 인해 품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존 소규모 용역업체의 설계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